

【(재)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152호】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Global BIZ Networking)」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기 간: 2023. 9. 18.(월)~22(금), 5일간
- 지 역: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 모집규모: 5개사
-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헬스케어 기업
- 지원내용: 수출상담회 참가비, 통번역, 바이어발굴, 현지 차량 임차비, 항공료(70%이내)
 - 항공료 제외 소요비용 90% 수준(기업당 한도 8,000천원)
 - 항공료 70% 이내(기업당 한도 2,000천원) *일반석 기준
 - (기업부담) 항공료 일부, 현지 체재비 일체
- 수행기관: (재)강원테크노파크

2. 주요일정(안)

일 자		주요일정	비고
9.17.(일)	1일차	출발 (인천→타슈켄트)	
9.18.(월)	2일차	제약발전청 / 간담회	Uzbekistan
9.19.(화)	3일차	수출상담회 / 네트워킹	Uzbekistan
9.20.(수)	4일차	의료기관 방문 / 이동(타슈켄트→알마티)	Uzbekistan
9.21.(목)	5일차	수출상담회 / 네트워킹	Kazakhstan
9.22.(금)	6일차	의료기관 방문 / 이동	Kazakhstan
9.23.(토)	7일차	도착 (알마티→인천)	

*상기일정은 항공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도내 헬스케어 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신청기간: 2023. 8. 18.(금)~2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http://gwdh.gwtp.or.kr/>
 [사업공고 → 사업공고 상세 → 사업신청 → 작성 및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제품 카달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영문·국문 각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지식재산권, 국내외 인증 실적 증명(해당시)
- 문의처

수행기관	담당자	연락처
(재)강원테크노파크	방지수 주임	033-748-8305 bjs@gwtp.or.kr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사전 서류검토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평가대상을 결정

- 사업의 부합성, 중복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서면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평가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화에 의한 수익성	10
	국내외 시장규모	10
	사업목표 및 지원수요의 명확성	10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의 적정성	10
	대표자의 추진의지	10
기업 경쟁력 (40)	전년도 수출액*	20
	지식재산권, 국내품질인증, 해외 인증 국제품질인증 취득 여부**	20
파급효과 (10)	산업적·경제적 파급 정도	5
	마케팅 활동의 기대성과	5

* 전년도 수출액 기준: 10천불 이상 100천불 미만 10점
 100천불 이상 200천불 미만 15점
 200천불 이상 20점

** 국외내 인증 및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배점은 개당 5점씩 최대 20점

○ 결과통보: 신청서 내 작성된 과제책임자에게 E-mail 발송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 발견 시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접수 기간 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하면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같

은 효력을 지님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수행 기간 또는 과제 종료 이후라도 과제와 관련하여 산업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제수행 성과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매출, 수출, 고용 관련 자료 등)

6. 선정 취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의 특별한 사유(부도·폐업·법정관리 등)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